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024. 2.

금 융 위 원 회

1.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변경 (안 제10조의11)

가. 제·개정 이유

○ 변경신고 시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 및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합리화

나. 제·개정 내용

○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되,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절차 합리화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안 제10조의12)

가. 제·개정 이유

○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물적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등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토록 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위험 경감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3. 직권말소 사유 추가 (안 제10조의13)

가. 제·개정 이유

○ 신고 직권말소 요건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대응에 한계

나. 제·개정 내용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를 직권말소 사유로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거래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